

의안번호	제3024호
의결	2025. . .
연월일	(제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2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규정 삭제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수량 삭제

(안 제5조제1항)

나.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함

(안 제5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9조

나.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
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4(2025. 9. 5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13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9. 1. ~ 2025. 9. 2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 타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
- 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- 다. 전몰군경 유족
- 라. 전상군경
- 마. 전상군경 유족
- 바. 무공수훈자
- 사. 보국수훈자
- 아. 독립유공자 유족
- 자. 공상군경
- 차. 공상군경 유족
- 카. 순직군경 유족
- 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제5조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참전유공자
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

3. 보훈격려금: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

4. 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</p> <p>군수는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국 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, 보훈격려금 등 (이하 “보훈명예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보훈명예수당</p> <p>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5만 원</u></p> <p>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5만 원</u></p> <p>다. 전몰군경의 유족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라. 전상군경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마. 전상군경 유족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바. 무공수훈자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사. 보국수훈자: 월 <u>5만 원</u></p> <p>아. 독립유공자 유족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자. 공상군경: 월 <u>10만 원</u></p> <p>차. 공상군경 유족: 월 <u>10만 원</u></p>	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</p> <p>----- <u>범위</u> -----</p> <p>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</p> <p>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</p> <p>다. 전몰군경의 유족</p> <p>라. 전상군경</p> <p>마. 전상군경 유족</p> <p>바. 무공수훈자</p> <p>사. 보국수훈자</p> <p>아. 독립유공자 유족</p> <p>자. 공상군경</p> <p>차. 공상군경 유족</p>

<p>카. <u>순직군경 유족: 월 10만 원</u></p> <p>타. <u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월 10만 원</u></p> <p>2. <u>사망위로금</u></p> <p>가. <u>참전유공자: 50만 원</u></p> <p>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: <u>50만 원</u></p> <p>3. <u>보훈격려금: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 각 5만 원</u></p> <p>4. <u>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 60리터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카. <u>순직군경 유족</u></p> <p>타. <u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</u></p> <p>2. -----</p> <p>가. <u>참전유공자</u></p> <p>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</p> <p>3. <u>보훈격려금: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</u></p> <p>4. <u>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--	--

붙임**비용추계서**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가. 관련 조문: 안 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제1항
 나. 비용발생 요인: 보훈명예수당 지급

2. 비용추계의 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904명

(2025. 8. 기준)

합계	6.25 참전 유공 자	월남 참전 유공 자	참전 유공 자배 우자	전상 군경	공상 군경	보국 수훈 자	전몰 군경 유족	전상 군경 유족	순직 군경 유족	공상 군경 유족	독립 유공 자 유족
904	46	241	312	1	47	33	43	131	20	18	12

나. 추계의 결과

- 1) 2026년: 1,562,640천 원

구 분	인원(명)	산출 내역	소요예산(천 원)
계	904		1,562,640
6.25, 월남 참전유공자	287	287명 × 180천 원 × 12월	619,920
참전유공자배우자 외 7개	584	584명 × 130천 원 × 12월	911,040
보국수훈자	33	33명 × 80천 원 × 12월	31,680

- 2) 2026년~2030년 추계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합계
세출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	7,316,400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~2030년 일반회계로 편성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합계
재원 조달	의존재원	-	-	-	-	-
	자체재원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
	기 타	-	-	-	-	-
	소 계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
						7,316,400

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정 영 랑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■ 국가보훈 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

· 공현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

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